

「농기계종합보험」 기초서류 변경대비표

(2020. 11. 10)

① 사업방법서 별지

현 행	변 경	비 고
(생략)	(현행과 같음)	

② 보통약관

현 행	변 경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1조(용어의 정의)~제19조(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생략)</p> <p>제20조(제출 서류)</p> <p>피보험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.</p>	<p>제1조(용어의 정의)~제19조(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0조(제출 서류)</p> <p>피보험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.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등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대인배상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대물배상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자기신체사고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농기계손해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. 보험금 청구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</td> </tr> <tr> <td>2.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(진단서 등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(*1)</td> </tr> <tr> <td>3.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.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의 확인서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</td> </tr> <tr> <td>5.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도난으로 인한 전손사고 시 말소사실증명서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손사고 후 이전매각 시 이전서류</td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</td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손사고 후 폐차 시 폐차인수증명서</td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</td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</td> </tr> <tr> <td>6.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(수리개시 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등	대인배상	대물배상	자기신체사고	농기계손해	1. 보험금 청구서	○	○	○	○	2.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(진단서 등)	○	○	○	○(*1)	3.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	○	○			4.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의 확인서				○	5.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				○	도난으로 인한 전손사고 시 말소사실증명서				○	전손사고 후 이전매각 시 이전서류		○		○	전손사고 후 폐차 시 폐차인수증명서		○		○	6.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(수리개시 전	○	○	○	○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등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대인배상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대물배상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자기신체사고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농기계손해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. 보험금 청구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</td> </tr> <tr> <td>2.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(진단서 등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(*1)</td> </tr> <tr> <td>3.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.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</td> </tr> <tr> <td>5.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도난으로 인한 전손사고 시 말소사실증명서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손사고 후 이전매각 시 이전서류</td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</td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손사고 후 폐차 시 폐차인수증명서</td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</td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</td> </tr> <tr> <td>6.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(수리개시 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등	대인배상	대물배상	자기신체사고	농기계손해	1. 보험금 청구서	○	○	○	○	2.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(진단서 등)	○	○	○	○(*1)	3.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	○	○			4.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				○	5.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				○	도난으로 인한 전손사고 시 말소사실증명서				○	전손사고 후 이전매각 시 이전서류		○		○	전손사고 후 폐차 시 폐차인수증명서		○		○	6.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(수리개시 전	○	○	○	○	표준약관 개정사항 중 농기계에 해당하는 부분 발취 반영
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등	대인배상	대물배상	자기신체사고	농기계손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 보험금 청구서	○	○	○	○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.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(진단서 등)	○	○	○	○(*1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.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	○	○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.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의 확인서				○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.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				○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도난으로 인한 전손사고 시 말소사실증명서				○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손사고 후 이전매각 시 이전서류		○		○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손사고 후 폐차 시 폐차인수증명서		○		○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.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(수리개시 전	○	○	○	○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등	대인배상	대물배상	자기신체사고	농기계손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 보험금 청구서	○	○	○	○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.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(진단서 등)	○	○	○	○(*1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.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	○	○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.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				○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.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				○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도난으로 인한 전손사고 시 말소사실증명서				○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손사고 후 이전매각 시 이전서류		○		○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손사고 후 폐차 시 폐차인수증명서		○		○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.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(수리개시 전	○	○	○	○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자동차점검.정비견적서(*2), 사진 등. 이 경우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.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, 보험회사는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.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(*2)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.)

자동차점검.정비견적서(*2), 사진 등. 이 경우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.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, 보험회사는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.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(*2)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.)

- (*1) 농협 농기계수리센터의 수리견적 및 계산서(농기계 부분손의 경우). 다만, 부득이한 경우「농업기계화촉진법」제13조(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)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사후봉사업자의 수리견적 및 계산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.
- (*2) '자동차점검.정비견적서'는 '농기계점검.정비견적서'를 포함하며, '자동차 정비업자'에는 '농기계 정비업자' 및 '농협 농기계수리센터'를 포함합니다.

- (*1) 농협 농기계수리센터의 수리견적 및 계산서(농기계 부분손의 경우). 다만, 부득이한 경우「농업기계화촉진법」제13조(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)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사후봉사업자의 수리견적 및 계산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.
- (*2) '자동차점검.정비견적서'는 '농기계점검.정비견적서'를 포함하며, '자동차 정비업자'에는 '농기계 정비업자' 및 '농협 농기계수리센터'를 포함합니다.

제21조(가지급금의 지급)~제55조(준용규정)

제21조(가지급금의 지급)~제55조(준용규정)

(생략)

(현행과 같음)

<부표> ~ <부표2>

<부표> ~ <부표2>

(생략)

(현행과 같음)

[별표1] 보험금 지급 기준

1. 대인배상 지급 기준

가. 사망

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

[별표1] 보험금 지급 기준

2. 대인배상 지급 기준

가. 사망

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

항 목	지급 기준
1.장례비~ 2.위자료	(생략)
3. 상실수 익액	가. 산정방법~다. 생활비율 (생략) 라. 취업가능월수 (1)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. 다만, 법령,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<u>산정함</u> .

항 목	지급 기준
1.장례비~ 2.위자료	(현행과 같음)
3. 상실수 익액	가. 산정방법~다. 생활비율 (현행과 같음) 라. 취업가능월수 (1)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. 다만, 법령,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<u>산정하며 피해자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</u>

표준약관 개정사항 중 농기계에 해당하는 부분 발췌 반영

항 목	지급 기준
	(2) ~ (5) (생략) 마. 라이프니츠 계수 (생략)

항 목	지급 기준
	<u>기본법,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,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일 경우(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)에는 취업가능연한을 7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.</u> (2) ~ (5) (현행과 같음) 마. 라이프니츠 계수 (현행과 같음)

나. 부 상

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

나. 부 상

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

항 목	지급 기준
1. 적극손해~2. 위자료	(생략)
3. 휴업손해	가. 산정방법 (생략) 나. 휴업일수의 산정 (1) ~ (2) (생략) (3) 취업가능연한: 65세를 기준으로 함. 다만, 법령,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<u>의함</u> 다. 수입감소액의 산정 (생략)
4. 간병비~5. 그 밖의 손해배상금	(생략)

항 목	지급 기준
1. 적극손해~2. 위자료	(현행과 같음)
3. 휴업손해	가. 산정방법 (현행과 같음) 나. 휴업일수의 산정 (1) ~ (2) (현행과 같음) (3) 취업가능연한: 65세를 기준으로 함. 다만, 법령,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<u>의하며 피해자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,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,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일 경우(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)에는 70세로 함.</u> 다. 수입감소액의 산정 (현행과 같음)
4. 간병비~5. 그 밖의 손해배상금	(현행과 같음)

표준약관 개정사항 중 농기계에 해당하는 부분 발취 반영

다. 후유장애

(생략)

다. 후유장애

(현행과 같음)

2. 대물배상 지급 기준

항목	지급 기준
1.수리비용~2.교환가액	(생략)
3. 대차료	<p>가. 대상 (생략)</p> <p>나. 인정기준액</p> <p>(1) 대차를 하는 경우 (생략)</p> <p>(2)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</p> <p>(가)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: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0% 상당액</p> <p>(나)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: 위 (1)-(가) 단서에 따라 대차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대차료의 30% 상당액</p> <p>(다)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: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0% 상당액</p> <p>다. 인정기간</p> <p>(1) 수리가능한 경우</p> <p>수리를 위해 자동차(농기계) 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, 30일을 한도로 함.</p> <p>다만,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^(*)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.</p> <p>(*1) “통상의 수리기간”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(범위)을 말합니다.</p> <p>(2) 수리 불가능한 경우: 10일</p>
4.휴차료~6.자동차시세하락손해	(생략)

(이하 생략)

2. 대물배상 지급 기준

항목	지급 기준
1.수리비용~2.교환가액	(현행과 같음)
3. 대차료	<p>가. 대상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인정기준액</p> <p>(1)대차를 하는 경우 (현행과같음)</p> <p>(2)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</p> <p>(가)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: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% 상당액</p> <p>(나)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: 위 (1)-(가) 단서에 따라 대차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대차료의 35% 상당액</p> <p>(다)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: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5% 상당액</p> <p>다. 인정기간</p> <p>(1) 수리가능한 경우</p> <p>수리를 위해 자동차(농기계) 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, 25일(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)을 한도로 함.</p> <p>다만,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^(*)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.</p> <p>(*1) “통상의 수리기간”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(범위)을 말합니다.</p> <p>(2) 수리 불가능한 경우: 10일</p>
4.휴차료~6.자동차시세하락손해	(현행과 같음)

(이하 현행과 같음)

표준약관 개정사항 중 농기계에 해당하는 부분 발췌 반영

3] 특별약관

현행	변경	비고
(생략)	(현행과 같음)	

4]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

현행	변경	비고
(생략)	(현행과 같음)	

5] 요율서

현행	변경	비고
(생략)	(현행과 같음)	